

종 법(宗法)

연수원법

- 제1조(설립) 종헌 제103조에 의하여 본종 수계초심 승려 및 기성승려 재교육기관으로 연수원을 설립한다.
- 제2조(목적) 기성승려 및 초심승려의 재교육을 통하여 종도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화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연수의무) 본종 승려 및 교임(원장)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- 제4조(운영규정) 연구원의 입학 및 졸업과 연수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원장이 정한다.
- 제5조(임원) 연수원장 및 연수부장을 두며 연수원장 유고시 연수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임기) 종헌 종법에서 정한 타기관의 원장급 임기와 같다.
- 제7조(순응) 연수부장은 연수원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.
- 제8조(겸직)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경우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경비) 연수원의 운영경비는 수강자의 부담과 총무원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0조(공포) 이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.
- 제11조(효력)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